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9. 6.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1. 본 법안의 주요 내용

- 본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등의 정보¹⁾를 추가하고, 이를 게시한 자와 방치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러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20%를 넘는 경우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2. 불법정보로서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의 불명확성 및 이를 기준으로 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함.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은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어떤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광범위하게 규제하게 될 위험이 높으며, 사소한 표현행위를 게시하거나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함.

1) 기타 신설 제2호의2 후단에 규정된 ‘음란’ 정보 및 ‘범죄 조장; 정보는 동조 제1항 제1호와 제9호에 이미 규정되어 규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설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즉,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등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임.

3. 일부 게시물(전체 게시물의 100분의 20)의 불법·유해성을 이유로 한 사이트 폐쇄의 위헌성

- 온라인 커뮤니티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표현을 교환하는 플랫폼임. 커뮤니티 내의 모든 게시물을 상시적으로 전수조사·검열하고, 불법정보 및 위와 같은 광범위한 기준의 혐오표현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문제적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커뮤니티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다른 합법적이고 선량한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4. 결론

- 본 법안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마저 지나치게 규제할 위험이 높고, 나아가 형사처벌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임.

끝.